

협동조합개혁, 축산분야 어떻게 이뤄지나



안 종 운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오랜 산고(産苦) 끝에 새천년의 농업·농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99년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7일 공포되었다. 총칙 174조 부칙 21조로 구성된 이 개혁법안의 공포로 협동조합개혁의 큰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제 남은 건 협동조합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0일 농림부 차관과 협동조합대표, 농업인, 농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설립위원회」가 간판을 내걸고 출범했다.

또한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설립사무국」과 협동조합통합 등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설립기획단」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혁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기까지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성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특히, 개혁법안 마련과정에서 낙농·육우농가들

이 보여준 협동조합개혁의 강한 의지표명은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500만 농업인의 오랜 숙원사항인 협동조합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마다 협동조합 임직원들과 기득권층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 '돈장사에만 신경쓰는 협동조합'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세간의 비판과 협동조합을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절대다수 농업인의 염원을 받들어 협동조합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협동조합개혁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어느 정권때와 다른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였다. 즉,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계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3월 8일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경제사업중심의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사실 이 방안은 '98년 4월 농업인, 학계, 협동조합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7차례에 걸쳐 논의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개혁방안 발표 이후 각계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을 구성·운영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개혁방안에 대한 수정·보완에 들어갔다.

의견수렴은 가능한 방법이 모두 동원됐다. 2백여회에 걸친 토론회·간담회·공청회를 비롯하여 인터넷·PC통신, 서신, 팩스, 홍보용 리후렛 등 어느 개혁과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개혁법안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다시한번 의견을 조정하였고, 6월 8일 정부안을 최종확정한 다음 6월 14일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가 2차례에 걸쳐 순연되다가 제206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되었다.

협동조합 개혁법안 주요내용

협동조합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 직전까지 수정·보완되는 등 큰 진통을 겪었다.

특히, 개혁내용중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법적보장이 최대의 관건이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축협 등이 주장하던 상당부분을 법안에 수용·반영하여 축산업의 위상을 크게 보장하였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합발전을 유도한 점이다. 또한 「품목조합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 독자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조합원자격과 관할구역을 종래와 달리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역 농·축협과 달리 자율적으로 사업관할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중 1/3이상은 품목조합장으로 선임토록 하여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하였다.

특히 5개 이상의 품목별 전문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여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공동구매·판매사업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향식 협동조합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와 달리 전국단위의 연합회도 전국 동일 품목조합의 2/3이상 참여하면 가능토록 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훨씬 보장되었다. 이 부분은 축협이 줄곧 주장해 온 내용중 「축산연합회」별도법인을 제외하고는 특례조항까지 신설하면서 대부분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였다.

개혁법 132조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대표자들이 모여 단수 추천한 자를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절차 없이 임명하고, 종전의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신용사업외의 재산의 관리권도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맡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부문에 대한 경영·인사·회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즉, 소관업무에 대한 경영목표를 세우고, 축산부문의 사업 및 자금계획을 수립·집행하며 독립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게 된다.

축산경제대표이사 소속의 집행간부도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권도 축산경제대표이사가 행

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회는 통합되지만, 일선축협은 새로운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서 그 지위가 당연 승계되어 현재의 명칭과 독자성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50조원이 넘는 농협중앙회의 튼튼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상호금융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되고 일선축협의 경영상태도 개선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회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을 일선축협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아울러 발생된다.

현재 중복기능 정비에 따라 연간 약 3,000억 정도의 경영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중복되는 신용점포, 도지회 등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대금은 5,000~6,000억원 수준이 예상된다.

또 중앙회 사업을 일선축협이 이관받거나 출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일선조합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한 대농민 서비스 기능도 훨씬 보장된다.

중앙회 통합으로 축산농가가 지금보다 훨씬 튼튼한 중앙회와 일선축협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축산업의 발전에 보다 기여하는 중앙회와 일선축협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국 3,000여개의 농·축협 유통시설을 망라한 통합유통체계를 구성하여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효율성을 높여 농산물 제값받기에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선축협 육성을 위해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특별경영자금 1조 4,500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중앙회통합후 일선조합 경영안정자금으로 100여개 조합에 대하여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조합에 조합당 30~50억원의 유통지원자금도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새 개혁법은 이처럼 축산분야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내용 이외에도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운영평가자협의회」에서 조합원의 경영상태는 물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회회의록도 조합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합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경영능력과 조합경영수지에 맞는 보수결정이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조합장과 이사 등 조합임직원의 경영책임이 강화되는데, 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농·축·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조직체로 슬림화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다각도로 지원·육성해 나가는 한편,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한 조합운동을 통하여 진정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내조합”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금번 협동조합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추진계획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확정된 것은 큰 골격과 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개혁실천과정에서도 협동조합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혁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7월 1일 통합중앙회 출범을 목표로 구성된 「협동조합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 「설립기획단」의 활동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중앙회 조직효율화 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중앙회의 바람직한 제도 및 조직체제, 인력조정 방안 등을 연구하여, 어떤 방안이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일선조



합과 조합원에게 환원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혁과정에서 논란거리였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도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신·경분리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하여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협 당사자, 농민단체, 교수 등으로 신·경분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다.

협동조합개혁법 공포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정신을 보다 충실하게 실천하고 농업인들이 새천년·새농업을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농업이 21세기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한층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말부터 시작되는 WTO 농산물 차기협상과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혁법안 마련과정에서 농업계의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면 새천년의 희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제 협동조합개혁이란 큰 그릇이 만들어졌으므로 그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낙농·육우농가를 비롯한 전체 농업인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특히, 우리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계시는 낙농·육우농가 여러분께서 협동조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필자연락처 : 02-503-7207)

※ 목 장 급 매 ※

- 위치 : 충북 괴산군과 음성군 경계지역
- 목장성업중이었음
- 목장부지 : 48,000평
(초지허가 면적 30,000평)
- 매매금액 : 390,000,000원(현금 2억 4천만원, 장기저리자금 잔액 1억5천만원)
- 별장주택 : 36평(통나무집)
- 관리사 : 16평(조립식)
- 톱밥우사 3동(200평)
- 사료급여기 : 50두용(알파라발)
- 냉각기 : 밀폐용 냉각기 (보일공업)
- 착유기 : 헤링본 착유기(간이식)
- 분뇨액비탱크(2톤)

※ 구입 및 목장이전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

TEL : 0331-232-5252

H.P : 011-253-8281

야간 : 0331-292-8281(야간 상담환영)